

구매 관련 Webasto 콘체른 일반 거래조건 약관
(07 / 2020)

1. 효력 범위

- 1.1 Webasto SE사와 이의 계열사(일개, 그룹 및 일명 "**Webasto사**" 또는 "**Webasto Gruppe사**") 구매 관련, 본 일반 거래 조건 약관(이하 약관)은 주식법(AktG §§ 15 ff)에 준거, 제조, 취득, 납품, 서비스 및 모든 종류의 제품 매매, 특히 원형, 부(속)품, 컴포넌트, 애그리게이트, 소재, 자재, 재료, 법과 권리, 서비스, 제품 및 시스템 기기, 장비 및 이에 포함되거나 연관되는 소프트웨어, 해당 문서 자료,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및 목적코드(일명 "**공급품목**")에 적용하며, 이는 Webasto사가 Webasto 제품 제조 목적을 위한 것이며, 각 공급업체 ("**공급업체**")의 Webasto사 관련 거래 활동 실행에 관한 것이다 ("**Webasto사 약관**"). 본 Webasto사 약관은 <https://startsuppliers.webasto.com> („**공급업체 포털**")에서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하다.
- 1.2 Webasto사와 공급업체(Webasto사, 공급업체 일명 "**일방**" 및 "**쌍방**")간의 법적 관계는 Webasto사로 인한 공급품목 구매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Webasto사 약관 규정에 따르며 Webasto사 약관은 툴 구매의 경우 필수 불가결한 구성 요소("**Webasto사 약관 툴**")이며, Webasto사 각 현행 공급업체-품질 가이드라인("**QW1**") 또한 각 공급업체 포털에서 열람 및 검색할 수 있다. 본 Webasto사 약관 규정을 분명하게 동의하지 않았을 지라도 이는 추후 공급품목 구매의 모든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이의 없이 공급업체의 공급 품목을 받아들이거나 이의 없이 공급업체에 Webasto사의 지급 이행은 결코 공급업체의 다른 조건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Webasto사는 쌍방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유로 공급계약 사항이 되지 않는, 각 약관, 추가적이거나 상반된 조건, 공급업체가 제시하거나 받아들인 조건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 외, 기타 개별적 이의제기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 1.3 공급업체는 공급업체로부터 수주받은 하도급업체 및 제 3자(제3조 참조)가 Webasto사에 대한 납품- 및 서비스 의무 이행을 위해 그 어떤 허용가능한 방법에서 Webasto사 약관 규정 내용에 상응, 적용할 수 있게 책임을 진다. 공급업체는 자신의 하도급업체 또는 제3자가 Webasto사 약관 규정에 준거하여 행하도록 Webasto사가 Webasto사 약관에 제시한 법적 권리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지어야하는 의무를 진다.
- 1.4 Webasto사 약관 및 공급계약(하기 제2조 3항 참조)의 변경, 추가 및 이면계약은 서면형식을 필요로 한다. 제 1조 4항 첫 문장에 준거, 서면형식 청구 변경의 경우에도 이는 유효하다.

2. 주문, 공급 계약, 공급 요청, 변경

- 2.1 공급품목 구매 주문, 공급계약, 공급요청 및 이의 승인, 변경, 추가는 서면형식이 필요하지만 팩스나 전자식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급업체가 주문 대상 및 제공물 대상을 공급 계약이나 공급 요청 체결 하, 공급품목 납품 및 서비스를 실시하면 공급계약이 성립한다.
- 2.2 Webasto사의 주문은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공급업체에 대한 제안이다. 공급업체가 이를 승인 하기 전, Webasto사는 언제든지, 공급업체에 대하여 그 어떠한 법적 책임없이 주문을 철회할 수 있다. 명백하지 않은 주문은 공급업체 제공에 대한 승인이 아니다. 공급업체의 제공 또는 서면에 관련한 주문은 전적으로 관련 품목에 대해서만, 관련품목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주문 후, 양적으로나 기한적으로나 불가능한 이유로, 공급업체가 Webasto사에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Webasto사의 최상 가능한 납기일 하, 공급 요청은 구속력이 있다.

- 2.3 공급업체가 주문이나 공급 요청을 서면 또는 전자 데이터 전송 방식으로 받아들이거나 주문 및 공급 요청 품목 납품 및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공급업체가 주문 또는 공급요청 및 Webasto사 약관 전부를 변경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유효하다. 제조, 취득, 납품 및 기타 공급품목 제공에 대한 모든 받아들인 주문이나 공급 요청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체결된 합의는 Webasto사 약관의 의미에서 "**공급계약**"으로도 정의된다.
- 2.4 특히, 개발 작업 범주 내에서, 시리즈 제품 스타트업 전, 또는 시리즈 제품 변경 전, Webasto사에서 통과된 제품 및 기술 시방서, 각각의 현 변경 상태(일명 "**시방서**") 하, 드로잉을 기반으로 견본 개발이 따른다. 첫 견본 형성 범주에 있는 시방서 변경 및 개선을 공급업체는 계획된 목적이나 품질요구에 따라 점검하며 Webasto사에 통지한다. 시방서는 Webasto사 요구에 상응하여 적합해야 한다. 공급업체에 있어 시리즈 생산 배당은 변경된 시방서를 토대로 한다.
- 2.5 수량 및 납기일은 전적으로 주문 및 공급요청에 확정되어 있다. 공급업체는 주문이나 공급요청에서의 예견되는 양을 포함한 수량을 이행할 수 있도록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한다. 공급 요청에 달리 정하여 있지 않는 한, 개개의 공급요청은 4주간의 완제품 출고 기한 및 4주간의 자재 출고 기한을 추가하여 제시한다. 이외, 주문이나 공급 요청에서 예견되는 양/계획은 구속력이 없다. Webasto사의 물품인수 의무는 앞에 제시된 출고 기한으로 제한된다.
- 2.6 Webasto사는 공급 품목에 관련하여 언제든지 시방서, 공급 계약 프로세스 변경 처리 및 공급업체로부터 이를 청구할 권리를 유보한다. 공급업체는 지체없이,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비용 및 납기일에서 그러한 변경의 결과에 비용절감("cost break down") 및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비용 및 기한 편차가 따를 경우, Webasto사와 공급업체는 공급계약에 상응하여 조정, 합의해야 한다.

3. 제3자 하도급, 생산지 변경

- 3.1 공급업체는 제3자에 하도급에 관한 정보를 Webasto사에 사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하도급에 대한 Webasto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Webasto사는 중요한 이유에서만 동의를 거절한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3자에 하도급은 Webasto사에 대해 공급업체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진다.
- 3.2 또한 공급업체는 공급품목 제조의 경우, 제품 및 공급품목이나 그 일부를 제조하는 생산지를 Webasto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변경하지 않는 의무를 진다.

4. 납품일자 및 납품 기한, 공급 이상, 공급 지연

- 4.1 주문 및 공급 요청에서 언급된 납기일자 및 납품 기한은 구속력이 있다. Webasto사 공장이나 소재지에 납품시, 납기 일자 또는 납품 기한의 준수에 있어 공급품목의 입고가 중요하다.
- 4.2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 품목의 납품은 "Delivered Duty Paid" (Incoterms 2010 DDP)를 준수하며 공급업체에로의 물품 반환은 공급업체의 비용으로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 4.3 공급업체는 공급이상시, 특히 지연되거나 일부만을 납품할 수 있을 경우, 그러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Webasto사에 서면으로 지체없이 전달한다. 이 경우, 공급업체는 공급 이상을 피하거나 이러한 결과에 대처하는 관련 대책, 특히 적합한 비상 컨셉을 통지한다.

- 4.4 공급업체는 공급업체가 Webasto사 및 Webasto사 고객에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아 초래된 모든 비용(특히 추가 화물운송비, 재장비 비용, 특별 교대, 대체품 구매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공급업체의 납품일자 지연시 Webasto사는 지연되는 매 첫째 주의 경우 보상으로 주문비용 및 납품요구 비용의 0.5%부터 최고 5%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Webasto사에 경미한 손해 또는 어떠한 손해가 없다라는 증거는 공급업체에 명백하게 유보하기로 한다. 이 외, Webasto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5 지연된 납품의 무조건적 수령의 경우, Webasto사는 4조에 준거 명백히 손해배상 권리를 추후로 유보한다. 또한 지연된 납품의 무조건적 수령은 Webasto사와 관련된 기타 배상청구 미포기를 포함한다.
- 4.6 공급업체가 지속적으로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을 가능하는 한, 공급업체는 기한 설정 후, 추론되는 권리에 준거 (제 16조 1항 참조) Webasto사의 요구에 따라 요구되는 Webasto사 소유 툴/장치 및 제3자 소유 툴/장치를 지체없이 반환함으로써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기한 비준수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Webasto사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로 인하여 제조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진다. 공급업체가 이러한 지연을 초래한 경우 이로 인한 교체 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이러한 교체 이유로 인한 공급업체의 청구는 배제된다. 이 외, Webasto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7 조기 납품, 일부 납품, 과량 납품은 Webasto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동의가 없을 경우 Webasto사는 납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공급업체의 비용으로 반송할 권리가 있다. Webasto사의 사전 동의와 무관하게 공급업체는 조기 납품, 일부 납품 및 과량 납품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 소요 비용 및 손해를 이러한 공급으로 초래되어 증가된 운송비를 포함하여 배상해야 한다.

5. 불가항력

- 5.1 불가항력, 노동분쟁, 소요, 관공서 조치 및 기타 부지불식간의 운영 이상, 예기치 못하게 피할 수 없는 중대사로 인하여 지속적인 이상이나 그로 인한 결과의 범위에 대해 쌍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시점에 있는, 해당 일방에서 지연이 될 경우에도 유효하다. Webasto사는 이러한 지연이 지속될 경우 달리 대체할 권리가 있다.
- 5.2 이러한 이상이 현저하게 지속되고 수요의 급격한 절감이 따를 경우 Webasto사는- 기타 권리 유지- 이행되지 않은 공급계약의 일부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 Webasto사로 인하여 초래된 서비스 이상 경우 Webasto 사는 비탈퇴 권리가 있다.
- 5.3 쌍방은 가능한 범위에서 지체없이 다른 일방에게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이상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화시키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공급업체는 5조 1항에 준거, 이러한 중대사로 인한 지연에 관한 정보를 Webasto사에게 지체없이 전달해야 한다. 공급업체가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거나 늦게 전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적시에 통보해 줌으로써 미연에 방지하였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쌍방은 이행의무 완수를 계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필요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기간동안 달라진 관계에서 쌍방의 의무를 신뢰와 믿음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5.4 공급업체는 제5조 1항에 언급된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Webasto사에게 적합한 비상 컨셉을 제시하는 의무를 진다.

6. 물품 출고검사, 포장, 배송, 원산지 증명서

- 6.1 공급업체는 공급품목 결함여부에 관련, 물품 출고검사를 실행한다.
- 6.2 공급업체는 모든 공급품목을 규정에 상응하여 포장, 표시 및 무역관행에서의 주도면밀 하에 최저 운송비로 배송해야 한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납품될 공급 품목은 추가적으로 Webasto사의 각 현행 포장규정(공급업체 포털에서 열람 가능)에 준거하여 포장한다. 결함있는 포장, 예를 들어 Webasto사의 현행 포장규정에 상응하지 않은 포장 및 그 어떤 다른 규정을 준수하여 생긴 손상의 경우, 공급업체가 법적 책임을 진다.
- 6.3 공급업체는 지체없이 관세규정 또는 기타 적용가능한 국가 규정에 준거 요구되는 모든 서류 자료 및 기타 정보를, 특히 상법적 또는 특혜(관세)법에 포함되어 있는 공급품목 및 자재 원산지 관련 a) 관세환급 서류 자료, b) 모든 원산지 증명서 및 c) 모든 기타 정보를 완전 구비해야 한다.
- 6.4 Webasto사가 운송회사 또는 운송수단을 지정할 경우, 공급업체는 이러한 운송회사 또는 운송수단에 상응하여 운송을 행한다.

7. 품질

- 7.1 공급업체는 자신의 공급 및 서비스가 정해진 사용에 적합해야 하며, 사용된 자재 및 무결함 품질 이행에 관련하여 책임을 보장한다. 공급업체는 공급 및 서비스의 경우, 최신 학문과 기술, 합의된 시방서, 품질규정, 환경규정, 모든 유해환경 기준 및 규제에 관한 규정, 안전 보안 및 테스트 규정, 합의된 기술 자료를 준수해야 한다. 공급품목 변경 및 자재, 공구, 제조과정의 변경은 이의 변경 전, Webasto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공급업체는 시방서를 점검해야하며 상황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특히 품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변경을 Webasto사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 7.2 공급업체가 유의해야하는 공급 품질보증 절차 관련, 각 현행 QW1가 유효하다. 공급업체는 QW1에서 언급된 절차 및 문서자료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기타 일부 특별 요구사항은 개별 품질 합의 하, 추가적으로 문서자료화 될 수 있다. 첫 견본에 대해 QW1에 기술되어 있는 절차는 첫 샘플 주문에 기록된 요구로 보완된다.
- 7.3 공급업체는 공급품목 및 이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절차의 경우, 공급품목이 장착되어 있거나 이를 위하여 사용된 제품에 대한 제조국 각 공급품목 및 제품 판매시장에 대해 유효한 국내 및 국제 법과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책임 보장한다. 공급업체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법 및 사법적 청구에서 Webasto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급업체는 합의한 바와 같이, 모든 필요한 시험 증(명)서를 동봉, 공급한다. 또한 공급업체는 자가비용으로 해당 시스템 조항에 언급된 규정 (예: IMDS (*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 준수 및 필요한 정보를 구비해야 한다.
- 7.4 공급업체는 자체적으로 시간, 방법, 공급 및 공급품목의 무결함 및 이의 제조자가 기재되어 있는 각 품질기록 자료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Webasto사 요구에 따라 지체없이 제공한다. 이러한 증(명)서는 공급품목이 사용된, Webasto사 고객의 시리즈 제품 종료 후에도 15년간 보관해야 하며, 필요시 Webasto사에 제시해야 한다. 공급품목 사용시, 특히 Webasto사 제품에 공급품목 장착시, 건강 및 생명에 대한 위험을 공급업체가 제거할 수 있을 경우, 공급업체는 증(명)서 보관기간 단축에 대한 권리가 있다. 공급업체는 선공급업체에 법적 가능한 동일한 범위에서 의무를 지닌다. 기타 증(명)서 특별 요구 및 증(명)서 자료 아키브화는 QW1를 준한다.

- 7.5 이와 무관하게 공급업체는 정기적으로 주문된 공급품목의 품질을 점검하고 QW1 품질요구와 더불어 이의 적합성 및 합의된 품질요구 보장은 물론 합의된 시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공급품목에 품질 이상이 생겼을 경우, 이러한 정보를 Webasto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또한 쌍방은 품질개선 가능성에 관하여 상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7.6 Webasto사는 사전 통지 후, 적정한 범위에서 현지 공급업체가 품질규정 준수, 품질관리 시스템에 관한 정보 및 해당 서류자료를 검토할 권리를 지닌다. 이 경우, 공급업체는 Webasto사가 요구하는 범주에서 서류 자료 제공 및 정보를 주면서 지원해야 한다.
- 7.7 공급품목이나 이의 일부가 국내 및 외국 현지법, 지침 및 기타 적용가능한 규정 준거, 안전에 관련된 경우, 공급업체는 Webasto사 요구에 따라 차량형식승인 및 공급품목 제조과정, 특히 방법(테스트 방법), 주체자(자연인/법인) 안전관련 공급품목 및 이 일부의 테스트 결과와 더불어 시방서에 준거, 문서 자료를 최소 10년 아카이브화 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차량안전, 배기가스 규정 및 기타 주관 관공서가 일정한 요구에 따른 재검토를 위해 Webasto사 제품과정 및 시험 서류자료 검사를 요구할 경우, 공급업체는, Webasto사 요구에 따라, 자신의 운영업체와 동일한 권리 인정 및 모든 가능한 지원 인정을 관공서에 사전 해명해야 한다.

8. 경쟁력

- 8.1 각 비용, 품질, 공급품목 혁신력 및 공급 안전 관련, 공급업체의 경쟁력이 공급계약 거래 기반이다.
- 8.2 Webasto사가 공급품목과 비교가능한 제품, 물품 및 서비스로 경쟁력있는 조건을 제시받은 경우, Webasto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공급업체에 전달하며 공급품목 완전 경쟁 재생을 위해 합당한 기간을 제시한다. 이의 경우 공급업체는 Webasto사에 지체없이 정정된 사항과 함께, 경쟁력 재생을 위한 대책 카탈로그를 작성, 제공한다. Webasto사가 경쟁력 재생을 위해 정정된 사항을 받아 들이는 경우, 지금까지의 공급계약은 변경된 조건으로 지속되며, 공급업체는 공급품목 경쟁력 재생을 위해 합의된 대책을 정정된 사항에 준거, Webasto사가 정한 합당한 기간 내 실행해야 한다. 경쟁력 유지 의무는 계약의 기본 의무이다. 위반시, 중요한 이유에서 Webasto사는 조정 요구 및 공급계약 일부 및 전체를 지체없이 해지할 수 있다.

9. 비용, 청구서, 지불, 3자 개입

- 9.1 합의된 비용은 각각의 유효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비용은 확정 비용이며 공급계약 하, 포장 포함, 공급품목의 제조,납품에 대한 전체비용을 구성한다. Webasto사 사전 서면 동의없이 공급업체는 비용을 조정하거나 그 어떤 종류의 추가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 9.2 주문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업체의 청구서는 - 계약 합의된 Webasto사 공급품목 상실 위험의 전이와 무관하게 - 계약에 준거, 일개 혹은 다수개의 공급품목 입고 후, 정식으로 확인가능한 청구서 수리는 60일이다. 청구서는 해당 법적 규정에 상응하여, 특히 부가가치세 식별번호, 납세번호, 공급 및 서비스 일자, 산정된 공급품목의 수량 및 종류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공급업체 번호, 인도증서, 주문번호 및 일자 (또는 공급계약 및 공급요청)가 기재되어야 한다. 완전하지 않은 주문번호가 기재된 청구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거절한다. 이에 상응하여 정정된 정식 청구서 수령은 합의된 지불 기한 시작에 있어 결정적이다.
- 9.3 조기 공급 수령시, 지불일자는 합의된 공급일자에 따른다. 청구서 점검 유보 하, 계좌 이체, 수표 또는 - 합의 한 바와 같이 - 입금 방식으로 지불한다.

9.4 결함있는 공급시, 제대로 이행될 때까지 Webasto사는 일부 미지불 권리를 지닌다.

9.5 공급업체는 Webasto사 사전 서면동의 없이 Webasto사에 반하는 청구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제3자를 개입시킬 권리가 없다. 공급업체가 제9조 5항 첫 문장에 대해 Webasto사에 반하는 청구를 동의없이 제3자에 위임시, Webasto사는 - 동의를 구한 후 - 공급업체에게서 면책 또는 자체적으로 제3자를 선택할 수 있다. 공급업체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연장된 소유권 유보를 제시할 경우, Webasto사 위임에 Webasto사 동의는 유효하다.

10. 결함 통고

10.1 Webasto사는 납품 입고 후, 인도증서 준거, 동일성 및 수량검사를 할 것이며 공급품목 납품이 명백하게 운송으로 인한 손상이거나 기타 인식가능한 외부 손상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여기에서 Webasto사가 결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Webasto사는 이러한 결함을 지체없이 공급업체에 통고한다. 여기에서 발견되지 않은 결함의 경우 Webasto사는 거래 과정에서 사실이 확정되는 즉시, 합당한 기간에 공급업체에 지체없이 통고한다. 이러한 경우 공급업체는 지연된 결함통고에 대한 이의를 포기한다.

10.2 결함확인 이전의 그 어떠한 지불, Webasto사 및 고객 점검, 공급품목 인수 및 기타 출하는 공급품목의 그 어떠한 무결함을 제시하지 않으며, 공급업체는 공급계약 및 Webasto사 약관의 규정에 준거, 보장 및 법적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11. 결함 청구

11.1 11조 준거 보장과 무관하게, 공급업체는 모든 공급품목이 a) 시방서, 특히 견본, 도면 및 기타 조항에 제시된 요구에 상응할 것을, b)설계, 제조, 자재의 무결함을, c)시장성이 있으면서도 최소 합리적인 품질제시를, d) 구매되는 특수 목적에 적합하였음을 보장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요구 중의 하나라도 상응하지 않는 공급품목이 확인되면 이러한 공급품목을 "**결함있는 공급품목**"으로 간주한다.

11.2 제조 (공정 또는 설치) 또는 사용 개시 전, 결함있는 공급품목이 발견되면, Webasto사는 우선 합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급업체에 축출 및 결함제거 또는 추가- (대체) 공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Webasto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경우이다. Webasto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특히 무이상 생산, 무이상 운영이나 Webasto사 및 Webasto사 고객의 손해 경감을 위해 Webasto사는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결함을 제거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든 비용을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Webasto사는 공급업체에 해당 결함제거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11.3 생산 제조 개시 후, 결함이 확인되면, Webasto사는 결함없는 공급품목의 납품 결함제거를 위해 들어간 소요경비, 특히 운송비, 교통비용, 노동비용(조사비용, 선별비용, 장착 및 탈착비용) 및 자재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급품목이 이미 Webasto사에서 또는 Webasto사 고객에게서 생산 및 판매 과정에 있거나 최종고객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 결함제거를 위해 기한을 정하는 것은 불필요로 간주한다. 공급품목이 이미 장착되어 Webasto사 고객에게 공급되었을 경우, 공급업체는 Webasto사가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일부를 조사용으로 받는다. 공급업체는 Webasto사가 기타 결함있는 공급품목을 제시하지 않고도 Webasto사 고객으로부터 제출 받았거나 Webasto사로부터 의뢰 받은 제3자(예:공장)를 근거로, 결함의 증거로서 결함 확인을 인정한다. 제11조에 언급된 비용 및 결함제거를 위해 결함있는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지 않아도, 특히 무결함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제시하지 않아도 들어간 소요경비 또한 배상해야 한다.

11.4 대체할 공급품목이 결함 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급업체에서 기술분석 또는 수정을 위해 제공되지 않을 경우, Webasto사는 공급업체의 비용으로, 즉 공급업체는 결함있는 공급품목을 Webasto사의 요구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폐기처리한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업체는 결함있는 공급품목을 자체적인 목적이나 제3자의 목적하에 판매하거나 이용할 어떠한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11.5 결함의 경우, 공급업체에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11.6 보증기간이 48개월인 북미 시장 (USA,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멕시코)에 Webasto사 제품 및 차량에 사용된 공급품목은 예외로, 납품된 공급품목에 대한 보증기간은 36개월이다. Webasto사 고객 측에서 보증청구를 이 기간 말기로 유효 할 경우, 언급된 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보증기간은 각각 최종제품 (차량 또는 기기)의 첫 허용부터, 또는 재장비를 위한 공급품목의 경우, 고객에 Webasto사 제품 장착부터 계산된다. 그러나 이 두가지의 경우, 최대 보증기관은 Webasto사에 공급품목 입고부터 60개월이다. 이러한 유효기간은, 공급업체가 공급품목의 결함을 부정하게 침묵하여, 이러한 경우에 개입되는 법적 보증기간이 보다 길어졌다면,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법적 보증기간이 보다 단축될 경우, 이러한 부정의 경우에도 위에 언급된 보증기간은 그대로 적용된다. Webasto사 또는 Webasto사 고객에 의해 판매되는, 독일 및 여러 국가 외의 제품 또는 부(속)품 결함청구에 대한 보다 연장된 시효기간 의도시, 이러한 연장된 기간은 11조 6항에 규정된 보증기간으로 대체한다.

11.7 위의 내용과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결함있는 공급품목 납품 및 기타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로 인한 기타 소송경비 및 손해배상 청구는 11조 규정이 유효하다.

12. 법적 책임

12.1 Webasto사가 제3자로부터 채무 과실과 무관한 법적 책임, 특히 제품에 관한 법적 책임에 대한 클레임을 받을 경우, 공급품목의 결함이 공급업체에 기인하는 한, 공급업체는 Webasto사에 그러한 종류의 클레임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소요경비 및 손해 (법적 소송비용 포함)에 대한 면책 의무를 진다.

12.2 Webasto사 및 제 3자, 특히 공급품목이나 공급품목에 포함되는 제품, 구성부품,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제조업체 (또는 다른 최종 제품)가 자체적 또는 관공서의 결정에 근거, 손해방지 대책으로 예를 들어 리콜, 대내외 수리 및 정비 대책, 고객 서비스 대책 또는 기타 대책 (일명 "리콜") 하에 클레임을 할 경우, 이러한 대책이 공급업체가 납품한 공급품목의 결함이나 공급업체가 공급계약의 기타 위반에 근거하는 한, 공급업체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소요경비 및 손해 (법적 소송 비용 포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12.3 공급업체는 제3자 청구의 대처 및 해명에 합당하게 Webasto사를 지원해야 한다. Webasto사는 공급업체 해당 법적 책임 사건의 경우, 공급업체의 정보 및 관여가 Webasto사에 있어 특히 긴급성으로 인해 불가능하거나 받아들일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당하게 이러한 실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며 공급업체에 과정보다 조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12.4 Webasto사의 기타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 특히 제품에 관한 법적 책임, 허용하지 않은 취급 및 무계약 거래 실행 경우, 제 12조 규정이 유효하다.

12.5 공급계약 또는 기타 합의의 의무 이행 범주에서 공급업체가 Webasto 사에, 고용인 위임 경우, 이로 인하여 Webasto 사와 이러한 고용인 사이에 어떠한 노사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공급업체는 정당하게 모든 가능한 세금 및 각각 이러한 고용인의 활동으로 인한 부과금을, 특히 해당 사회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한다. 이에 공급업체는 각각 가능한 청구 및 특히 유사 자영업체나 유사 자영업체의 질책으로 인한 제 3 자의 청구 유효성에서 Webasto 사를 처음부터 전적으로 면책한다.

13. 보험

공급업체는 자체 비용으로 자신의 의무에 관련하여 보장할 적합한 보험 가입 의무를 진다. 공급업체는-공급업체가 공급품목 제조자일 경우- 최소 5 백만 유로 및 위험이 증가되는 공급품목, 특히 전기 부품의 경우, 최소 일천만 유로의, 적합한 지급 보상액이 손해배상 건당 보상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착 및 탈착 비용 및 차량리콜보험을 포함하여 생산물 배상책임보험과 함께, 특히 영업 운영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진다. 공급업체는 계약체결 전, 이러한 보험 증서를 Webasto사에 보장 범위 및 이의 보상액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서명확인을 제시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보험가입을 Webasto사에 매년 해당 보험사의 서면 확인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14. 제3자의 권리, 보호권, 이용권

14.1 공급업체는 공급품목, 제조과정 및 공급품목의 이용이 그 어떠한 제3자의 권리 및 특히 국내 또는 국외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에 관한 권리(일명 "보호권") 불침해를 보장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소요경비 및 손해(법적 소송비용 포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또한 공급업체는 공급품목 사용 또는 판매를 통해 보호권 실제 위반 또는 주장하는 위반으로 인하는 제3자의 모든 청구 및 요구조건으로부터 Webasto사를 면책한다.

14.2 쌍방은 주지된 위반위험 및 주장된 위반의 경우, 지체없이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 및 가능한 청구에 대해 상호간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합당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분석 및 문서자료 평가시 무비용으로 지원하는 의무를 진다.

14.3 공급품목 사용에 대한 공급업체의 보호권 및 저작권을 Webasto사가 요구할 경우, 공급업체는 Webasto 사에게 국제적으로, 변경취소 불가능한, 무비용으로 공급계약 범위에서 납품된 공급품목을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가 이용하고, 수리 및 다시 만들 권리를 준다.

14.4 표준 사용자 소프트웨어가 공급계약의 품목인 경우, 이용권은 14조 3항에 준거 적용하며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공급업체는 Webasto사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제공 의무를 진다. 다중 사용에 대한 지불은 전적으로 배제한다. 공급업체는 소프트 웨어에 바이러스가 없으며 결함이 없음을 확약한다.

14.5 공급계약이 Webasto사가 지불 (일시불 또는 분할불)한 개발작업을 포함하는 경우, 공급업체가 공급계약 범위에서 달성하거나 사용한, 전체적인 개발결과, 특히 노하우, 시도 및 개발보고, 동기, 아이디어, 디자인, 컨셉, 레이아웃, 도면, 제안, 샘플, 모델, 소스코드 포함 소프트웨어, 데이터 자료, 히스토리 포함 CAD 등등(일명 작업결과)는 Webasto사 소유이다. 공급업체는 보호권이 가능한 개발결과, 특히 발명권을 획득, Webasto사에 양도를 보장해야 한다. 보호권이 가능한 개발결과, 특히 발명의 경우, 공급업체는 Webasto사에 이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Webasto사는 자사 명의 자체 청구서에 보호권 등록신청 권한이 있다. Webasto사는 통보 후 4주 이내에 공급업자를 통해 보호가능한 결과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공급업체는 자신의 권리를 지체없이 Webasto사에 양도 의무를 진다. Webasto사가 신청에 반하는 결정 및 이미 신청된 보호권에 더

이상 관심이 없을 경우, 공급업체는 자체 비용으로 계속 행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Webasto사는 무제한, 무비용, 비독점 사용권을 유지한다.

- 14.6 공급업체의 저작권이 작업결과를 보호하는 한, 이로써 공급업체는 Webasto사에 비독점적인, 변경취소불가능한, 양도가능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모든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무비용으로 임의적으로 이용, 변경, 처리할 무제한 권리를 인정한다. 작업결과의 보호권 또는 보호권가능한 작업결과는 공급계약의 범위에서 공급업체 서비스가 행해지는 동안 14조 5항 1절 및 2절이 유효하다.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작업결과에 포함되어있는, 이미 존재하는 보호권, 저작권 및 보호권가능한 권리의 경우, Webasto사는 변경취소불가능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제한으로, 비독점적 이용권 및 서브라이센스가 가능하며 이는 Webasto사 뿐만 아니라 Webasto사를 위한 제3자의 제조 및 지속적 개발을 목적을 위한 무비용 이용을 포함한다.

15. 제품 라벨

공급업체는 Webasto사가 정하거나 합의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Webasto사 등록 상표, 라벨이나 상응하는 특징 및 Webasto사 오리지널 포장으로 포장되어 있는 공급품목을 공급업체는 전적으로 Webasto사에 또는 Webasto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또한 Webasto사의 상표 및 라벨 이용권은 공급업체에 용인되지 않는다. Webasto사 상표 또는 Webasto사 라벨로 표시된 공급품목 전체 또는 일부가 결함 및 결함으로 표시되어 반납되면, 이를 공급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폐기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의무 중의 일개 항목을 위반할 경우, Webasto사는 기간없이 주문 해제, 위반으로 인한 반환 및 Webasto사에 생긴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있다.

16. 제공된 소유재산

- 16.1 Webasto사 또는 Webasto사 고객이 공급업체에 제공한, 전체 틀, 모델, 템플릿, 매트릭스, 샘플, 측정기, 장치, 품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방서, 특히 도면, 기밀 정보 및 구조 데이터(예: CAD), 기타 부속 자료, 장비, 자재 또는 기타 제조 수단 및 전체 대체 또는 추가, 서스펜션, 액세서리 및 메인テナンス는 Webasto사 또는 Webasto사 고객에 완불 또는 분할불- 또는 상각 지불하며, Webasto사 또는 Webasto사 고객 소유재산(일명 "제공된 소유재산")이며 그리고 그럴 것이며, 서면으로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공급업체에 전적으로 차용 방식으로 허용한다.

- 16.2 제공된 소유재산은 Webasto사의 사전 서면동의 하에서만 제3자에 공급 사용된다. 공급업체는 제공된 소유재산을 Webasto사를 위한 전적으로 공급품목 제조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의 그러한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 16.3 제공된 소유재산은 Webasto사 또는 Webasto사 고객 소유재산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급업체 및 제3자의 소유 재산으로부터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제공된 소유재산을 자체 비용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대체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제공된 소유 재산을 보관 및 통제하고 있는 한, 이의 위험을 부담한다. 공급업체는 자체비용으로 분실시, Webasto사 또는 Webasto사 고객이 지불한, 재구입비용에 상응하는, 액수의 보험에 가입한다. 공급업체는 이로써 보험업체에 대한 모든 지불청구를 Webasto사에 양도하며, Webasto사는 이를 수용한다. 공급업체는 제공된 소유 재산을 신중하게 위험없이 취급하며 Webasto사는 제공된 소유 재산의 장착, 사용, 보관 또는 수리로 인하거나 이와 연관된 모든 청구, 법적 책임, 비용 및 손해에 관련하여 배상해야 한다. Webasto사 또는 Webasto사 고객은 일반 업무시간에 공급업체의 운영 현장 방문 및 제공된 소유 재산에 관련 자료를 점검할 권리가 있다.

16.4 Webasto사는 언제든지 이유 및 지불에 상관없이 제공된 소유 재산을 공급업체의 운영 현장에서 제거 및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Webasto사의 이러한 요구에 공급업체는 제공된 소유 재산을 지체없이 내어주며 배송을 준비하거나 Webasto사 또는 Webasto사 고객에 인도한다. Webasto사는 공급업체에 합당한 배송비용을 지불한다. 공급업체는 제공된 소유 재산에 관련하여, 특히 미체불 및 다른 이유를 고사하고 유치권이 없다.

17. 스페어 부(속)품 공급

Webasto사 고객의 차량 제품 및 타 제품에 장착된 공급품목의 경우, 공급업체는 시리즈제품 동안 Webasto사 스페어부(속)품 요구를, 고객의 시리즈제품 종료 후 15년을 보장해야 한다. Webasto사 문의에 따른 시리즈제품 종료 일자를 공급업체에 통지한다. 가격은 공급계약 존속 동안, 공급계약에서 정한, 각각 현재 제품가이다. 주어진 15년간의 최소한 첫 4년은 합의를 한, 시리즈 제품 종료 비용과 포장 및 처리 등의 추가적 기타 비용이다. Webasto사가 요구할 경우, 공급업체는 Webasto사의 스페어 부(속)품 판매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추가 비용 유효성없이 제공해야 한다.

18. 비밀 유지

쌍방은 쌍방의 거래 관계에서 알려진,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존재하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업적, 기술적 세부사항, 정보 및 데이터를 업무 비밀로 기밀하게 다루며, 특히, 모델, 템플릿, 매트릭스, 샘플, 측정기, 장치, 형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예: CAD), 소스 코드, 시방서, 특히 도면, 기밀 정보 및 구조 데이터 및 기타 공급품목(일명: "기밀 정보")을 권한이 없는 제 3자에게 내어 주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의무를 진다. 이러한 기밀 정보의 복사는 회사의 요구 및 저작권적 규정의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권한이 없는 제 3자, 하도급업체, 권한자 및 직원은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 공급업체는 Webasto 사의 사전 동의 하에서만 거래 관련 홍보를 한다.

19. 소유재산 유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소유재산은 공급업체가 납품할 공급품목 및 부품 제조 비례 및 Webasto사 분할 지불에 상응하여 또는 완불과 함께 Webasto사에 양도한다. 공급업체가 요구하는 모든 또는 기타 소유재산 유보는 배제한다.

20. 공급업체 툴

20.1 공급업체는 Webasto사가 공급업체에 이미 지불한 가격 또는 공급품목가 상각을 뺀, 필요한 툴의 현재 시세가의 지불 대가로 Webasto사에 공급품목의 제조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변경취소 불가능한 옵션, 툴 소유 및 소유 재산 ("필요한 툴")을 언제든지 허용한다. 공급업체가 기타 표준제품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툴을 필요로 한다면 이 옵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20.2 공급업체는 Webasto사가 설치, 조립 및 기타 필요한 툴 사용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정보를 Webasto사에 제공해야 한다. 기술 정보는 공급품목 및 툴에 관련하는, 구조-, 어셈블리- 및 설치도면, 기타 기술 문서자료, 테스트 프로토콜, 결과,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Webasto사는 공급업체의 특허권 또는 보호권의 제약없이 기술 정보를 무제한으로 사용 및 공개를 유보한다. Webasto사는 자체 목적을 위해서만 공급업체의 지적 소유권 하의 구조- 및 제품정보를 사용한다.

21. 콘체른 상계 조항

Webasto사는 Webasto SE사 또는 Webasto SE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최소 50 % 관련하는 회사에 대해, 공급업체가 이러한 회사들 중의 한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 공급업체에 대한 청구에 대해, 그 어떠한 종류의 또는 추후 청구에 대해, 상계할 권리가 있다.

22. 계약 종료

22.1 Webasto사는 언제든지 공급계약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합당한 기간 (보통 30일) 하에 서면으로 해지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쌍방은 미지급 소요비용 및 유효한 공급요청 등의 하, 공급업체가 제조 및 주문한, 비제조물 및 원료소재 직접비용을 차감한다는 그리고 이미 제조된 공급품목에 대해 합의된 시리즈 비용을 지불한다는 목적 하에, 합당한 상쇄 지불을 합의해야 한다. 이 경우 쌍방은 예를 들어 자재를 달리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한다.

22.2 각 측은 다른 측이 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본질적인 계약의무 위반할 경우, 이러한 중요한 이유로 공급계약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제 및 공급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 할 권리가 있다.

22.3 Webasto사에 있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a)공급업체가 직접적으로 연이어 현저한 기간초과를 초래한 경우, b) 공급업체가 반복하여 Webasto사 품질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c) 공급업체 자산 관련 파산절차 또는 사법적 절차 또는 조정절차 개시 및(권리남용 신청이 아닌, 공급업체 또는 제3자의) 지급불능으로 기각된 신청을 신청한 경우, d) 파산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개시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공급업체의 전체 자산이나 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이행된 경우, e) 공급업체의 소유재산 관계 또는 회사 지분의 본질적 변경으로 인하여 Webasto사가 공급계약의 지속을 이성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경우, f) Webasto사 고객이 현재까지 제공한 공급품목 제품에 대한 Webasto사와의 공급계약을 종료한 경우, g) 공급업체의 자산상태가 본질적으로 악화되어짐으로써 납품에 어려움이 있거나 공급업체가 지급을 중단한 경우이다. 공급업체는 - 22조 3항 f)에까지 - Webasto사에 위에 언급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정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전달할 의무를 진다.

22.4 공급계약이 종료된 경우, 공급업체는 Webasto사의 청구에 따라 제공한 소유재산 및 모든 기밀 정보, 이의 카피를 포함하여 지체없이 자체비용으로 Webasto사에 반환하거나 Webasto사의 청구에 따라 이를 폐기하며 서면으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공급계약의 종료 경우, Webasto사는 권리가 있다. 종료된 거래관계에서의 모든 정보 및 공급계약에서 언급된, Webasto사의 범위 및 공급품목 제품에 있어 제3자가 절대적으로 필요로하는 정보를, 해당 정보가 산업 보호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한, 양도할 권리가 있다. 작업결과 관련 해당 규정은 유효하며 공급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22.5 10조에서14조까지, 17조, 18조, 22조에서 24조까지 규정은 공급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23. 컴플라이언스,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23.1 공급업체는 유효한 법을 준수하며, 공급업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타 제3자에 기인할 수 있는, 특히 사기, 배임, 파산 관련 및 수출입 통제, 이득 보장, 이익수수, 뇌물, 수수, 부정 부패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 행위를 포함, 사법 및 공법에 위법하는, 처벌 가능한 행위 및 부정 경쟁 처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부작위로 위반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Webasto사는 기간 제약없이 공급계약을 중단, 철회 및

해제할 권리가 있다. 앞에서 언급된 것과 무관하게 공급업체는 의무를 진다. 공급업체 및 Webasto사와의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법 및 규정을, 무엇보다도 데이터 보안과 관련하여 완전 준수 의무를 진다.

23.2 Webasto 사는 자사 직원 및 이 외 회사에 대한 기업 활동의 사회적 책임 고려에 중요한 의미를 둔다. Webasto 사 뿐만 아니라 Webasto 사 공급업체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러한 이유로 공급업체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a) **결사의 자유, 임금 및 사회보장 급여, 근무 시간:** 모든 직원은 조합, 노동자 대표를 구성 및 참여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인정한다. 이러한 권리가 현지 법으로 제한되는 곳은 옵션적으로 노동자 대표의 합법적 가능성을 진척시켜야 하며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 소수민족 출신, 피부색, 성, 종교, 국가, 성적 지향, 사회적 출신이나 정치적 관점에 무관하게 타인에 대한 민주적 원리 및 인내에 기인하는 기회균등 및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직원은 기본적으로 적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 임용, 장려한다. 급여 및 사회보장 급여는 최저임금, 초과 근무 및 법적으로 규정된 사회 보장 급여의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보장한다. 노동시간은 유효한 법, 현지 규정이나 국제 노동 기구 (ILO) 협약에 상응해야 한다. 초과 근무는 자유 의지로 행해져야만 하며 근로자는 6 일 근무 후, 최소 1 일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Webasto 사는 그 어떤 착취 및 비자발적 죄수 노동을 포함하는 강제노역의 의도적인 이용을 거부한다.
- b) **아동노동의 금지:** 공급업체는 자사가 납품할 공급품목의 제조 및 공정이 아동노동의 착취없이 국제 노동 기구 협약 규정 182 조 준수 및 이러한 협약 또는 다른 적용가능한 국내 및 국제 규정 이행 의무 위반이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공급업체는 자사 및 자사 공급업체가 납품할 공급품목의 제조 및 공정시, 국제 노동기구 협약 182 조의 의미에서 아동노동 착취를 배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적 지향적인 대책을 세웠음을 보장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자신의 하도급업체에 상응하는 의무 및 연이어 이의 다른 하위 공급업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어야만 하며 이와 관련한 점검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Webasto 사는 이러한 보장의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Webasto 사의 문의에 따라 공급업체는 자사의 대책을 증명해야 한다.
- c) **노동의 자유 선택:** 공급업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노동을 하거나 강제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는 노동관계를 합당한 기간의 준수 하에 해제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의 신분 증명서, 여권 또는 노동허가를 노동을 위한 선조건으로 양도할 것을 노동자에게서 요구 해서는 안 된다.
- d) **보건 및 안전:** 공급업체는 고용주로서 국내 규정 범주에서 작업장에서의 작업안전 및 보건을 보장해야 하며 작업세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 e) **일반 환경의무, 환경친화적 생산 및 제품:** Webasto 사는 환경보호에 관련, 생산 공정 및 제품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임을 미리 판단하고 회사의 결정 관련 사안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생산 공정 및 제품은 전체의 관점 하에 가능한 한, 자원을 보호하면서 환경친화적으로 구상한다. 공급업체는 환경보호 관련, 사전예방 원칙에 의거하여 행해야 하며, 다수의 환경책임 지원 대책을 강구하며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장려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모든 생산 과정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환경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환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의 결과를 피하거나 최소화 하기 위하여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수자원 및 에너지 자원의 절약 테크놀로지 - 배기 배출물 감소,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전략 투입에 입각한 - 적용 및 지속적 개발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f) 이와 더불어 Webasto 사는 공급업체가 안전보건 의무 범주에서 마찰재 용융 미네랄을 피할 것을 기대한다. 추출, 운송, 거래, 취급/공정 또는 비국가 무장단체에 수출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경우, 미네랄은 마찰재로 분류된다. 공급업체 또는 하위 공급업체가 이용한, 용융 또는 제련 미네랄 - 예를 들어,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에 관한 정보를 Webasto 사 문의에 따라 Webasto 사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Webasto 사는 공급체인에 따라 공급업체의 안전보건의무를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공급업체가 이용한 미네랄, 특히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이 직간접적으로 군사 분쟁의 지원 및 원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 및 이의 이행을 포함한다.

기타 제품관련 환경표준: 공급체인에서 제조된 제품은 이의 각 시장부문의 환경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모든 제품에 사용된 자재 및 소재를 포함한다.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제품 및 기타 소재는 확인되어야 한다. 이의 경우, 이를 적합한 접근법으로 안전하게 처리, 운송, 보관,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할 수 있는 위험소재 매니지먼트를 결성해야 한다. 생산자재 공급업체는 의무를 진다. 늦어도 공급계약 후 2년까지 ISO 14001, EMAS 및 이와 비교가능한 표준에 준거하여 증명할 수 있는, Webasto 사와의 거래관계 전체 기간 중에 운영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여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이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적시에 새로운 증서를 제시해야 하는, 환경매니지먼트 시스템 도입 의무를 진다.

또한 공급업체는 a) 어떤 기기나 시스템에 설치되지 않은, 움직이는 부품 형태 (최소 1개 부품이 움직일 경우 (예: 공기식 실린더, 전기모터))의 공급품목에 있어 각 법적 토대에 준거한 제조업체 선언을 제출해야 하는, b) 제조 기기 및 시스템 형태 (예: 회전기, 조립시스템, 자동 포장기, 시험대) 공급품목에 있어 각 법적 토대에 준거한 CE-적합성 선언이나 이와 비교가능한 표준 적합성 선언을 제출해야 하는, c) 위험소재 공급품목에 있어 각 법적 토대에 준거하여 독일어 또는 영어, 또는 Webasto 사가 주문한 회사 소재지가 있는 현지 언어로 안전 데이터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d) 세라믹 파이버 및 글래스 파이버 재료 및 이를 포함한 형태의 공급품목에 있어 각 법적 토대에 준거하여 독일어 또는 영어, 또는 Webasto 사가 주문한 회사 소재지가 있는 현지 언어로 안전 데이터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아울러 공급업체는 각 공급품목에 관련하는 구매 고객 국가 및 제조국가의 규범, 법, 기타 규정, 예를 들어 전기부품에 대한 독일 전기 기술자 협회(VDE) 규정, 유럽 폐차지침 및 유럽 위험재화 규정을 유의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모든 공법 및 사법적 청구에서 Webasto 사를 면책한다. 공급업체는 합의한 바와 같이, 모든 요구되는 시험증(명)서를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g) **공급체인 표준 장려:** 공급업체는 자신의 공급업체에 23 조 2항 a)부터 e)까지 열거된 지속가능성 표준 내용을 전달하며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고 공급체인의 지속가능성 표준 준수를 점검한다.

23.3 Webasto 사는 공급업체의 경우, 사전 통보 후, 정규 업무시간에 공급업체 대표자의 참석 하에서만 23 조 2항에 언급된 요구사항을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개개의 적용가능한 권리 및 특히 데이터 보안에 상응, 현지에서 점검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실사를 이행하기 전, 쌍방은 Webasto 사 표준에 상응하는, 합당한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하며, 실사에 합당한 내용 및 범위 및 이의 시간적 범위를 서로의 동의 하에 의결한다.

실사 이행에 Webasto 사가 의뢰한 그 어떤 외부 전문가도 이에 상응하는 비밀유지 협약을 Webasto 사와 체결한다. Webasto 사는 이에 대한 의무를 진다. 공급업체 실사 대상 (회사, 공장 등등)이 현지법을 위반한 상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한, 실사의 범위에 개인 신상 자료, 노동자 계약, 청구서 및 급여 임금 자료, 사회 보장 자료 또는 이러한 종류의 비교가능한 자료를 열람해서는 안 된다. 공급업체가 합당한 열람을 동의할 경우, 이러한 열람은 항시 익명으로 처리되며, 각 적용가능한 데이터보안법 고려 하에 행해진다. 쌍방은 이러한 열람의 세부 사항을 사전에 의결한다. 한편, 그 어떤 실사 이행은, 쌍방이 각각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위반을 방지, 검출, 저지하기 위한 시스템 및 프로세스 시험으로 제한한다. 공급업체가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실사 범위에서 그 어떠한 사진을 촬영하거나 복사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명백하게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도 공급업체는 중요한 이유없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다.

24. 기타 일반 규정

- 24.1 공급업체의 반대 청구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거나 Webasto사가 인정한 경우, 11조 5항에 무관하게, 공급업체에 유치권을 인정한다. 또한 공급업체의 반대 청구가 동일한 권리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공급업체는 유치권 행사 권리가 있다.
- 24.2 이행 장소는 Webasto사의 공급업체가 공급품목을 계약에 준거하여 납품하는 공장 또는 소재지이다.
- 24.3 공급계약에 명확하게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Webasto사 약관을 포함, 주문을 행하는 Webasto사 사업소재지가 있는 국내(또는 주)법이 공급계약에 우선한다.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UN-매매권) 및 국제 사법 분쟁 규정은 전적으로 배제한다. Webasto사와 공급업체는 공급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경우, 주문을 행한 Webasto사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으로 동의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Webasto사는 공급업체에 대한 소를 공급업체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제기할 권리가 있다.
- 24.4 Webasto사의 약관이나 관련된 기타 합의 사항의 한 규정이 무효이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 이 외 나머지 Webasto사의 약관이나 관련된 기타 합의 사항은 유효하다. 공급계약의 체결 후, 추가할 내용이 있을 경우, 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쌍방은 무효한 규정을 가능한 한, 쌍방에게 균등한 경제적 원원 규정으로 대체할 의무를 진다. 계약 추가 규정의 경우, 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